

# 조선시대 훼가출향(毀家黜鄉)의 성격과 전개 양상

---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jinsim@aks.ac.kr

---

- I. 머리말
  - II.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제정과 출향(黜鄉)의  
법제화
  - III. 16세기 향벌(鄉罰)로서 훼가출향(毀家黜鄉)의 대두
  - IV. 정부의 훼가출향 금지조치와 조선후기의 양상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 I. 머리말

---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대한 탐구는 해방 이후 진행된 경제사 중심의 조선후기사에 대한 부조적 이해, 경제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여 특히 1980,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족층의 성장, 향약·동계 등 향촌 사회조직, 향촌사회 운영의 특징과 변동 양상 등 지역사회 내부 동향에 주목한 이들 '향촌사회사' 연구의 주요 성과는 아무래도 사족지배체제로 개념화하여 이해한 것이다.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는 향촌의 사족들이 수령권과의 타협을 전제로 자치 영역을 확보한 지배구조를 말하는데, 시기적으로는 16, 17세기에 그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 시기 사족들이 향촌 내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鄕案)을 기반으로 향회(鄕會)를 통해 향권(鄕權)을 장악하고 아울러 유향소 설치, 향약 시행, 서원 건립 등 사족 주도 재지배기구를 행사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가 18,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동을 겪으면서 양반사회가 해체되어 간다는 주장이 지금까지의 향촌 사회변동에 관한 사회사 연구자들의 핵심 주장이다.<sup>1</sup>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역사상을 보다 풍부히 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변동의 모습에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지만 좀더 다양한 지역 사례의 검토를 통한 가설의 검증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향촌, 혹은 촌락사회 내부의 사족지배의 실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앞선 연구에서 향권(鄕權)의 핵심으로 향촌사회 지배기구

---

1 관련 연구가 적지 않지만 대표 성과로 다음 두 책을 들 수 있다.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7);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경인문화사, 2017).

의 인사권, 그리고 부세운영권을 들고 있는데<sup>2</sup>, 필자는 사족들의 향촌사회 내부 자율성, 자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것 외에 재판 내지 형벌권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찍이 중국사의 거목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는 중국사회 형벌의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적 형벌권과 비국가적 형벌권으로 구분하고, 명청 시대에 향신(鄉紳), 지주(地主) 등에 의해 촌락의 자율적 재판과 형벌이 행해졌음을 밝힌 바 있다. 또 집권적 관료체제와 막강한 황제권력으로 대표되는 전통 중국에도 국가권력의 관철에 한계가 있어서 형벌권의 문제가 국가와 제 집단과 복잡하게 연계되었음을 주장하였다.<sup>3</sup> 또 국가 지배기구와 별도로 촌락(村落)과 종족(宗族)이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촌락, 종족, 길드에 의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연구<sup>4</sup> 또한 중국사회에서 자치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재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한 종족(宗族) 결합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며, 국가에서도 사적(私的) 지배권력 및 형벌권의 행사에 부정적이었음을 밝혀 청대 중국사회의 촌락, 종족사회의 재판권 설정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sup>5</sup> 이들 중국사 연구는 관권(官權)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치권이 행사되었다고 이해되는 조선시대 향촌사회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 이에 관한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족의 재판권, 자체 처벌권에 대한 분석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규범, 촌락공동체의 존재 양상, 사족 자치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

2 김인걸(2017), 위의 책, 13-14쪽.

3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刑法』(東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59), 22-33쪽.

4 奥村郁三, 「中國における官僚制と自治の接点: 裁判權を中心として」, 『法制史研究』 19 (1969).

5 寺田浩明, 『中國法制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8), 136-143쪽.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향약(鄕約) 기구가 갖고 있는 재판권, 처벌권을 통해 자치의 양상을 분석한 한상권의 글이 관련 연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그는 서원향약(西原鄕約)의 사례를 바탕으로 16세기의 향약 기구가 재판권과 함께 태(筴) 40의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17세기에 사족들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향약이 보유할 수 있는 자치력의 상한선이 함흥부향약(咸興府鄕約)의 태 20에 그쳤음을 밝혔다.<sup>6</sup> 16, 17세기 시행된 다양한 향약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향약 조직이 보유한 형벌권의 약화가 사족 자치권의 감소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한상권의 연구 이후 최근에 박현순은 향약에 기재된 사족들의 각종 제재, 처벌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 있어 주목된다. 그는 향약에 등장하는 출향(黜鄕) 등 처벌 조항을 유형화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다.<sup>7</sup> 이어서 또 다른 논문에서는 향약·향회에서 시행되는 향벌(鄕罰)과 성군관·향교·서원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유벌(儒罰)을 구분하여, 공론과 자율이 중시되던 17세기에 향촌사회 사림이 주도한 유벌의 종류와 실제 시행 사례를 분석하였다.<sup>8</sup> 이로써 당시 사족들에 의해 향촌사회에서 시행되던 각종 처벌의 종류와 효력, 특징을 좀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는 향촌사회 사족들이 행사한 처벌권의 행사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서 박현순이 향벌의 하나로 소개한 바 있는 훼가출향(毀家黜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훼가출향은 향촌사회에서 중대한 죄를 지은 경우 집을 부수고 당사자를 고을에서 쫓아내는 처벌을 말한다. 앞서 박현순의 글에서 사족층의 공론이

6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1984).

7 박현순, 「조선시대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5(2004).

8 박현순, 「17세기 지방 유생들의 士林儒罰」, 『한국문화』 42(2008).

중시되고 향벌과 유벌이 많이 시행되던 16, 17세기의 사례를 잘 소개하고 있지만, 훼가출향은 그 연원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상 시기를 조선시대 전체로 확장하여 훼가출향의 법제적 측면, 시기별 양상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다. 비록 훼가출향 조치에 한정하였지만, 이 조치를 통해 조선시대에 사족이 행사한 자치권의 수준과 시기별 양상, 향촌 공동체의 운영 질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9</sup>

## II.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제정과 출향(黜鄉)의 법제화

향촌은 군현을 말하는 향(鄉)과 촌락·마을이란 의미의 촌(村)이 결합한 용어인데,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 이후 군현은 한말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 사족들의 향촌지배란 향소·향안 등 군현 단위의 조직과 동약·동계 등 촌락 단위의 조직을 바탕으로 향촌 사족들이 일정한 자치권을 관철, 행사해왔음을 의미한다.<sup>10</sup> 본 절에서는 조선중기 사족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벌로서의 훼가출향 분석에 앞서 그 용어의 유래와 조선초기 훼가출향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훼가출향의 연원은 중국

9 이전에 필자는 조선중기 사족들의 향촌지배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毀家黜鄉 문제를 사족들의 막강한 자체 처결권의 상징적 행위로 간략히 다룬 바 있다(심재우, 「수령의 대민지배와 재지사족」,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아카넷, 2000)). 본고는 당시 연구의 보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0 이에 대해서는 정진영(1997), 앞의 책, 21-29쪽 참조.

춘추시대까지 소급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주(紂) 정공(定公)의 때에 자기 아버지를 시해한 자가 있었다. 유사가 이 일을 정공에게 고하니 공이 놀라서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말했다. “이것은 과인의 죄로다. 과인이 일찍이 이 죄에 대한 형옥을 판결하는 법을 배웠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모든 관직에 있는 자가 그를 죽여 용서하지 않으며,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면 모든 집에 거하는 자가 그를 죽여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집을 허물며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드니, 임금은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술잔을 든다.”<sup>11</sup>

위의 내용을 통해 중국 주나라 정공 때 임금을 시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범한 경우 범인을 처형한 후 범인이 살던 집을 허물어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 뒤에 보듯이 ‘파가저택(破家滌澤)’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는데, 역모죄인이나 강상죄인을 처형하고 범인 가족의 집을 완전히 부숴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연좌제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형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사족들이 시행한 훼가출향은 이 『예기』의 파가저택에서 연원한 것으로, 조선시대 기록에는 훼가출향(毀家黜鄉), 파가저택(破家滌澤), 파가저택(破家滌宅), 파가출향(破家黜鄉), 출향저택(黜鄉滌宅) 등 다양한 용어로 쓰였다.<sup>12</sup>

춘추시대 주 정공 무렵에 처음 등장한 파가저택형은 이후에도 중국

---

11 『禮記』「檀弓下第四」. “邾婁定公之時 有弑其父者 有司以告 公瞿然失席 曰 “是寡人之罪也” 曰 “寡人嘗學斷斯獄矣 臣弑君凡在官者殺無赦 子弑父凡在宮者殺無赦 殺其人 壞其室 滌其宮而塗焉” 蓋君踰月而后舉爵”

12 관련 용어는 15세기 실록에 등장하는 기록에 의거하였으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전거는 생략한다.

역사에서 종종 시행되었다. 예컨대 『당률소의(唐律疏議)』에 “모반(謀反)·대역(大逆)의 죄인은 삼족(三族)을 멸하고 그 집을 더러운 연못으로 만들어 악을 제거하고 근본에 힘쓴다”<sup>13</sup>라는 구절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시대에 반역 등 중대 정치범에 대한 연좌 처벌의 형식으로 시행된 사례가 몇몇 기록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고려 공양왕 때 반역죄로 이인임(李仁任)을 부관참시하고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거나<sup>14</sup>, 신돈(辛旽)을 극형에 처한 후 가산(家産)을 적몰하고 그 집을 웅덩이로 처하라는 사헌부의 요청에 국왕이 윤허하는 기사<sup>15</sup>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예기』에 수록되어 고려시대에도 집행된 적이 있던 연좌 형벌의 하나였던 파가저택은 조선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광해군대 이항복(李恒福)의 언급이 주목된다. 1611년(광해군 3) 9월에 조정에서 남편을 죽인 여인에 대해서 파가저택을 시행할 것인가 논란이 되었다. 이때 이항복은 남편을 죽인 여인에게도 파가저택을 시행한 최근의 전례를 비판하고, 임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파가저택형을 주 정공이 언급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경우나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6</sup> 이로써 조선전기에 반역죄인이나 아버지 살해와 같은 패륜적인 강상범에게 파가저택이 시행되고 있었고, 파가저택을 집행하는 강상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고려시대에 파가저택은 단순히 반역이나 강상죄인에게만

13 『唐律疏議』 名例32 「彼此俱罪之贓」. “謀反大逆 罪極誅夷 汚其室宅 除惡務本”

14 『高麗史』 권126, 列傳 권39, 姦臣 李仁任.

15 『高麗史』 권132, 列傳 권45, 叛逆 辛旽.

16 『광해군일기』 권16, 광해군 3년 9월 20일(병진). 이 때 파가저택에 관한 이항복의 주장은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다(『白沙先生別集』 권3, 議 「弑夫人破家瀦宅當否議」 참조).

한정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시행 범위가 본읍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멸한 자에게까지 더욱 확대된 것이 분명하다. 1438년(세종 20) 형조에서 함경도 고원(高原)의 박의생(朴義生)이란 자가 공신(功臣)인 자신의 아버지 배경을 믿고 본읍 수령을 능욕하였다고 장형 100대를 가하면서 고려시대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출향(黜鄉)시켰다는 기사가 그것이다.<sup>17</sup> 이는 고려 때 반역이나 부친 살해범 외에도 본읍 수령을 능욕한 경우에 훼가출향이 이루어졌고 조선초기에도 그런 관행이 지속되었음을 말한다. 이 기사와 이듬해에 의정부에서 올린 다음 기사는 고려시대 파가저택, 훼가출향의 사례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형전(續刑典)』에 이르기를, ‘주 문공(朱文公)이 효종(孝宗)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께옵서는 중외의 사정전옥관(司政典獄官)에 깊은 조칙을 내리시어, 무릇 옥송(獄訟)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존속(尊屬)·비속(卑屬)·윗사람·아랫사람·어른·어린이의 친하고 먼 관계를 분별한 연 후에, 그 옳고 그른 사연을 듣게 하소서. 무릇 아랫사람이 윗어른을 범한 것이라든가 비속이 존속을 업신여겼든가 하면, 비록 옳다 하더라도 편들지 아니하고 그 옳지 아니하면 죄를 보통 사람보다 더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하였다’ 하였고, 고려 때에는 이러한 뜻에서 백성이 수령을 업신여겨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배척하고 내쳤으며, 심지어는 그 집을 못으로 만든 뒤에야 그쳤는데(至濫其宅而後已), 근년에도 전라도 무진(茂珍) 사람 노흥준(盧興俊)과 평안도 강동(江東) 사람 곽만흥(郭萬興)이 모두 고을 백성으로 수령을 업신여기고 능범하였다 하여 집을 부수고 동네에서 내친(破家黜鄉) 일이 있고, 이것은 성문된 법규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감사나 수령을 능욕하여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자는 일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밝게 일러서 거행하게 하소서”

17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8월 3일(을묘).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8</sup>

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 때 고을 수령을 능욕한 자의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들어 쫓아냈으며, 이런 전례에 따라 조선 세종 때 전라도 무진(茂珍)과 평안도 강동(江東) 지역에서 수령을 능범(陵犯)한 고을 백성의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축출했다. 의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수령 뿐 아니라 감사에게 능욕하여 강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여 출향하자는 요청을 하여 세종의 윤허를 받는다. 이 기사 중에 ‘저택(澁宅), ‘파가출향(破家黜鄉)’ 등이 보이는데, 이처럼 파가저택, 훼가출향이라는 말은 당시 서로 넘나들면서 쓰는 용어임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훼가출향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는 시기는 세종대의 이른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초기 중앙권력과 그 대항자인 수령권에 도전하는 양대 세력인 품관(品官)과 향리(鄕吏) 가운데 품관층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에 짝하는 향리층에 관한 조치가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이다. 기본적으로 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 건국 이후 국가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관권 우위의 향촌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9</sup>

향촌에서 수령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백성들의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민고소금지법의 입법은 1420년(세종 2) 예조판서 허조(許稠)의 발의로 촉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종사안위(宗

18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2월 21일(경오).

19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태진, 「사림과의 留鄕所 복립 운동: 조선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 34·35(1972·1973)을 들 수 있고, 관련 연구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백승아, 「15·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한국사론』 61(2015)에 상세하다. 특히 백승아의 글은 15세기 이 법의 제정에서부터 16세기 개정 과정에까지 시기를 확대하여 조선전기 국가의 지방통치 방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事安危)와 비법살인(非法殺人)이 아닌 이상 부사(府史)·서도(胥徒)가 그 관리를, 그리고 품관(品官)·이민(吏民)이 고을 수령과 감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sup>20</sup> 이후 2년 뒤인 1422년에는 이 법이 더욱 강화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량도 결정되었다. 즉 종사(宗社)와 비법살인과 관계되지 않으면 수령 고소를 수리하지 않으며, 그래도 고소하는 자는 장 100, 유 3,000리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sup>21</sup> 다시 이 법에서 장 100, 유 3,000리의 형벌과 함께 횡가출향 조치가 법규로서 추가되는 시기는 1450년(세종 32)이다. 다음 1454년(단종 2) 기사를 보자.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죽산(竹山) 사람 김망룡(金亡龍)이 본읍의 수령(守令)을 능욕하였습니다. 『속형전(續刑典)』을 상고하건대, ‘품관, 이민으로 수령과 감사를 고발한 자는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와 불법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면 수리하지 말고 장(杖) 1백 대·유(流) 3천 리로써 논하라’고 하였고, 경오년의 수교(受教)에는 ‘감사, 수령을 능욕한 자는 전조(前朝)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저택(溍宅)하고 향리(鄕里)에서 쫓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김망룡(金亡龍)은 청컨대 이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22</sup>

위의 기사는 고을 수령을 능욕한 경기도 죽산의 김망룡이란 자를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면서, 동시에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여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들고 일가족을 고을에서 쫓아내는 ‘파가저택출향(破家溍宅黜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수령을 고소하여 능욕한 자에게 파가저택출향을 공식화한 수교(受教)가 이보다 앞선 경오년, 즉 1450년(세종 32)에

20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13일(무인).

21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 2월 3일(경인).

22 『단종실록』 권11, 단종 2년 6월 18일(기해).

마련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법을 어긴 자에 대한 훼가출향 조치 사례가 세종대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 확인된다.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1439년(세종 21)에 황해도 해풍군의 부사 직 황득부(黃得富)가 본군 수령에게 욕을 하고 준비 질서를 잃었다는 이유로 형조에서 부민고소금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요청하자 세종은 그를 장 100에 처하고 처자(妻子)를 모두 출향(黜鄉)시켰으며<sup>23</sup>, 이듬해에는 경상도 진주의 정현룡(鄭現龍)이 본읍 수령을 꾸짖고 욕을 했다고 전가출향(全家黜鄉)하고 함길도 회령진(會寧鎭)으로 천사(遷徙) 조치하였다.<sup>24</sup> 단종 즉위년인 1452년에는 경상도 영덕현 사노 말응(末應) 등이 고을 수령을 매욕(罵辱)하였다는 이유로 출향저택(黜鄉澣宅) 조치가 시행되었으며,<sup>25</sup> 이듬해에는 경상도 합천군에서 도둑질이 적발되어 국문받는 과정에서 수령에게 욕을 한 서원(書員) 강중(姜中)을 장 100대에 출향저택한 후 황해도 참일수(站日守)로 삼기도 하였다.<sup>26</sup> 1457년(세조 3)에도 송사 처리가 불공정하다고 수령 면전에서 험한 말을 한 충청도 전의의 최난금(崔難金)을 출향저택에 처한 바 있으며<sup>27</sup>, 1475년(성종 6) 3월에는 사헌부의 요청으로 수령을 능멸한 충청도 단양군 백성들을 출향저택하거나, 출향 후 전가사변하기도 하였다.<sup>28</sup>

물론 부민고소금지법을 어긴 자들에게 항상 훼가출향의 부가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때론 집을 부순 후 연못을 만드는 저택(澣宅) 조치가 지나친

23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1일(정미).

24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9일(신해).

25 『단종실록』 권6, 단종 즉위년 12월 21일(기유).

26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4월 16일(계묘).

27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9일(기해).

28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14일(계해).

대응이라는 이유로 이를 면해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1442년(세종 24)에 함길도 흥원현감 김공(金兢)이 소를 도적질했다는 이유로 백정 이난수(李難守) 부자를 처벌하여 죽게 하자, 이난수의 아내 의주(宜州)라는 여인이 이웃 사람인 전 사직 안영록(安英錄)에게 부탁하여 관찰사 한확(韓確)에게 현감 김공의 죄를 고소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안영록은 올문에 의거하여 장100, 유3,000리에 처하고 출향 조치를 해야 하나, 세종은 그가 공신의 아들이므로 출향저택(黜鄉濼宅)과 유배 대신에 형벌을 일부 감경하여 본도의 심원처(深遠處)에 전가입거(全家入居)시켰다.<sup>29</sup> 이러한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민고소금지법에 의거하여 15세기에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멸한 자에게는 부가형으로써의 회가출향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 고대에 처음 시행된 반역죄, 강상범에 대한 회가출향 조치는 고려시대에 이미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원이 오래되었다. 고려에서는 고을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욕한 경우에도 시행되었고, 조선에 와서 세종대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고려의 전례에 의거하여 회가출향이 공식화되게 된다.<sup>30</sup> 이처럼 회가출향은 애초 국가에서 시행하는 형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역 사회에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족들이

29 『세종실록』 권98, 세종 24년 10월 23일(경술).

30 조선초기 부민고소 금지 관련 규정은 법전에 실리는 과정에서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즉 『경국대전』에는 품관, 이민이 관찰사, 수령을 고소한 경우 장 100, 도 3년, 무고한 경우에는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되 부가형으로 이들을 출향(黜鄉)시키도록 규정하였다(『경국대전』 권5, 刑典 「訴寃」. “…… 關係宗社及非法殺人外 吏典僕隸 告其官員者 品官吏民 告其觀察使守令者 竝勿受 杖一百徒三年(品官吏民 則黜鄉) 陰嗾他人發狀者 罪亦如之 其自己訴寃者 竝聽理 誣告者 杖一百流三千里(品官吏民 則亦黜鄉)”. 이는 앞서 세종 32년의 수교에 언급된 ‘과가저택출향(破家濼宅黜鄉)’ 대신에 ‘출향(黜鄉)’으로 바뀐 것이다. 한편 중종대에는 수령 고소에 대한 처벌이 장 100, 도 3년에서 양계 및 황해도 지역으로 전가사변(全家徙邊)시키는 것으로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 규정은 『대전후속록』에 실린다.

관의 허가 없이 향촌민에게 행사할 경우 조정에서의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 Ⅲ. 16세기 향벌(鄉罰)로서 훼가출향(毀家黜鄉)의 대두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왕조에서는 건국 이후 고려시대부터 시행되던 훼가출향의 관례에 의거하여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욕하는 품관, 부민들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훼가출향은 국가 형벌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 15세기 지배체제가 정비된 이후 지역별로 사족층이 형성, 성장해가면서 훼가출향은 향촌사회에서 공동체적 자치질서를 위반하거나 지역의 향론(鄉論)을 거스른 자들에게 사족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향벌(鄉罰)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본 장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족층의 성장, 이에 따른 16, 17세기 사족주도 지배신분구조의 확립 과정은 관련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데, 대체로 16세기 초반 사족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임진왜란과 17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사족지배구조가 더 확고히 확립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sup>31</sup> 이런 가운데 향촌자치 조직으로서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향약(鄉約)의 위약자(違約者)에 대한 자체 처벌 규정 가운데 출향(黜鄉)이 명문화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조선중기 사족들의 향벌로서 논란이 된 훼가출향의 출현 배경과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향약에 실린 향벌의 내용과 성격부터 살펴본다.

31 16세기 사족층의 성장 과정과 임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1)에 상세하다.

당시 여러 향약에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를 벌목(罰目)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향벌(鄉罰)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향약의 향벌 규정은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32</sup> 첫째, 우리의 관심인 출향(黜鄉)은 불통수화(不通水火)와 함께 향약에서 제일 무거운 처벌로 제시되어 있다. 출향, 수화불통은 사족, 상민 층 등 상하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벌로서 관에 처벌을 맡기는 ‘고관치죄(告官治罪)’를 제외한다면 향약에서 자체 처리하는 최상위의 처벌에 해당한다. 여기서 출향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대상자를 고을 밖으로 축출하는 것을 말하는데<sup>33</sup>, 울곡 이이가 청주목사가 되어 1571년에 시행한 서원향약이 출향 조치를 명분화한 가장 이른 시기의 향약이다.

둘째, 출향·불통수화와 같은 극벌 다음으로 사족층에게 적용된 향벌은 삭적(削籍), 손도(損徒), 제마수(濟馬首), 면책(面責), 주벌(酒罰) 등이 있다. 이 중 향안(鄉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삭적과 일정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손도가 향약의 중심적인 처벌로 가장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제마수는 벌례(罰禮)의 일종으로 벌을 집행하는 자가 말을 나란히 하고 피벌자의 집에 몰려가서 죄를 성토했으며, 피벌자는 사죄의 뜻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접대하는 방식이다. 면책은 모임에서 피벌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행위이고, 주벌은 피벌자가 향약 구성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는 것이었다.

셋째, 상민과 향리층에게 시행한 것으로 태벌(笞罰)이 있었다. 태벌은

32 이하 향약의 향벌 규정에 관한 서술은 주로 박현순(2004), 앞의 논문, 12-23쪽에 의거하였다.

33 박현순은 향약에 실린 ‘黜鄉’이 대상자를 향리에서 물리적으로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水火不通’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박현순(2004), 위의 논문, 15쪽). 하지만 필자는 사회적 고립이나 자격 정지 등을 의미하는 ‘水火不通, 損徒’가 별도의 벌목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향은 글자 그대로 향촌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560년 이황이 작성한 동계 규정인 온계동령(溫溪洞令)에서부터 보인다. 이이의 향약 중 서원향약에서는 수령이 면계장(面契長)에게 태40 이하의 자단권(自斷權)을 부여하였고, 해주 사창계약속에서는 사안에 따라 태40-10의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박현순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벌의 상한이 태50을 초과하는 향약은 없었는데, 이는 향약의 자체 처벌권한을 법전에 규정된 수령의 자단권 태50보다 높게 설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 여러 향약 조문에 명문화된 향약 주도층이 행사한 자체 처벌 조항을 살펴보았다. 태형은 물론 출향 조치까지도 명시할 정도로 향약 규정의 의제화(擬制化)되었다고 이해되는데, 이는 당시 지역의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있던 사족들이 향벌을 매개로 한 그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약을 설계한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기 향약이 많은 경우 수령의 후원 하에 운영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sup>34</sup> 위에서 제시한 향벌을 관권을 배제한 향촌 사족들의 온전한 자체 형벌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필자 판단으로는 향약 조문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출향 조치가 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족들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sup>35</sup>

이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조대 경상도 진주 사족들이 주도한 훼가출향 사건을 음미해보기로 한다. 1569년(선조 2)에 발생한 이 사건은 죽은 진사 하종악(河宗岳)의 후처인 이씨(李氏)의 음행 소식을 들은 진주

34 박현순은 향약을 사족향약, 군현향약, 수령향약으로 세분하면서, 17세기의 많은 향약이 수령의 후원 하에 사족층이 하민층을 포괄하여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박현순(2004), 위의 논문, 2004, 4쪽).

35 예컨대 서원향약에서 黜鄉은 향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규약을 어기고도 고치지 않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출향에 앞서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명시하고 있다(『栗谷全書』 권16, 雜著 「西原鄉約」. “憚於修飭 不欲參約 或違約作過 終不俊改者 報官治罪後黜鄉”). 이는 출향이 사실상 관의 동의, 혹은 양해가 전제가 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이씨와 간부(奸夫)로 지목된 인물의 집을 부수고 향리에서 쫓아내는 행동을 감행하여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sup>36</sup> 지역 사림을 대표하는 조식(曹植)과 문인 정인홍(鄭仁弘)은 당초에 관련 소문을 듣고 감사에게 고하여 음부(淫婦) 이씨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남명의 수제자인 하항(河洸) 등 유생 50여명이 가노(家奴)를 대동하고 북을 울리면서 진주 수곡에 있는 이씨와 간부의 집을 직접 헐어버렸는데, 그 명분은 고을의 풍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휘가출향 직후 경상감사 정유길은 유생들을 무단율(武斷律)로 다스리려 하였고, 지역 사족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 사건은 조정에게까지 논란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집을 헐어버린 유생들을 무죄배로 지목하여 엄한 처벌을 주장한 대사헌 박응남(朴應男) 등의 의견과 이들의 행동이 사사로운 혐의가 아닌 공의(公議)에서 비롯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경연관 신응시(申應時) 등의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결국 유생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진주 사건은 경상도에서 사족들이 시행한 첫 휘가출향 사례로 평가받는다.<sup>37</sup> 정인홍이 수령을 협박하고 고을을 무력으로 억압하며 조금이라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휘가출향하거나 통문을 돌려 정거(停擧)시켰다는 실록에 실린 사신(史臣)의 평가에서 보듯이 당시 경상우도 지역에서 복인계 사족들이 향론을 주도하며 수령권을 위협할 정도의 막강한 일향지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38</sup> 위에서 살펴본 진주 휘가출향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사족들의 자치 영역이 확대되고 그들의 향촌지배력이 점차

36 진주 휘가출향 사건은 曹植과 李楨의 절교, 그리고 영남에서 李滉과 曹植 문인간의 갈등과 분기를 가져오는 큰 파장을 낳았는데,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정만조, 「선조 초 진주 淫婦獄과 그 파문」, 『한국학논총』 22(1999)에 의거하였다.

37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5월 1일(갑진).

38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21일(정유).

커져가던 상황이 반영된 사례이다. 여기서 훼가출향은 더 이상 부민고소금 지법의 취지인 수령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고을의 풍기 유지라는 명분하에 향촌자치 혹은 향론을 주도하기 위해 사족들이 행사하는 향벌로 변질되었다.

사족들의 훼가출향 사례가 처음 등장한 선조대에는 경상우도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모두 복인 학자 정인홍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예컨대 1602년(선조 35) 부사과 이귀(李貴)가 올린 상소문에는 정인홍과 그 문인들의 지역 내에서의 전횡의 한 사례로 훼가출향을 거론한다. 즉, 이귀가 체찰사 이덕형(李德馨)의 소모관(召募官)으로 영남을 방문하여 정인홍의 죄상을 조정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인홍의 문인들이 공격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귀가 머문 집을 태워버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귀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선비들을 손도(損徒)하고 이귀의 족질인 거창에 사는 이시익(李時益)에 대해서는 경상우도에 통문을 돌려 훼가출향을 감행하기도 했다.<sup>39</sup> 이와 함께 1604년(선조 34) 경상도 함양에서 정인홍을 비방, 고발한 인물인 양홍주(梁弘澍)를 이 지역 향인들이 훼가출향하려고 한 시도<sup>40</sup>, 정인홍의 문하로 들어가서 1610년(광해군 2)에 정구(鄭逋)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린 박이립(朴而立)이 성주에서 훼가출향당한 사례<sup>41</sup> 등도 경상우도 지역의 분위

39 『선조수정실록』 권36, 선조 35년 윤2월 1일(갑오).

40 鄭景雲, 『孤臺日錄』 권4, 1604년 2월 27일(무신).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함양 향인들은 수령에게 보고하여 훼가출향을 시도하였는데, 수령은 양홍주가 弑逆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훼가출향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박현순은 이에 따라 훼가출향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박현순, 「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 儒罰」, 『한국문화』 42(2008), 12쪽).

41 鄭逋, 『寒岡先生別集』 권1, 書 答李景發(天培)叔發(天封); 崔恒慶, 『竹軒集』 권4, 附錄 記聞錄. 참고로 『竹軒集』에는 당시 유생들이 집을 모두 부수려고 했으나 정구의 문인 崔恒慶의 의견에 따라 기와만 하나 부수는 형태로 毀家出鄉을 행한 것으로 나온다. 박이립 사건을 비롯한 이 시기 성주지역 사족층의 동향에 대해서는 김무진, 「조선후기 성주 향촌사회 재지사족층의 동향」, 『한국사연구』 105(1999)과 김

기를 반영하고 있다.

진주 등 북인계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던 경상우도 지역에서 시작된 혜가출향은 이후 경상좌도로 이어졌다. 인조반정 직후에 외방에서 조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람들이 혜가출향 조치를 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실록에 보고되고 있었는데<sup>42</sup>, 이때는 앞서 경상우도 지역의 사례와 정반대로 북인계 인물들이 혜가출향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계암일록』을 통해서 우리는 반정 직후 경상도 영천과 예안, 두 지역에서 발생한 혜가출향의 구체적인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이들 두 사례는 향교가 개최한 유회(儒會)에 참석한 지역 인사들이 피벌자의 집을 찾아가 죄를 성토했고 집을 부순 것으로 나온다. 영천의 경우 수백명의 대소 인원이 노비 등을 동원하여 시행하였는데 단지 그 문만 부순 반면, 예안에서는 집을 부수기 위해 선비들과 품관 100여명이 모였다. 그러나 집을 부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군정(軍丁)들로 하여금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된다.<sup>43</sup>

한편 경상우도 지역을 시작으로 경상좌도로 확대된 혜가출향은 마침내 다른 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살펴본 경상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혜가출향 실행 사례는 연대기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그 구체적인 내용, 배경은 확인되지 않지만 1643년(인조 21) 양주의 전별좌 김전(金璣)이 평소 갈등이 있었던 친아들을 모함하기 위해 관학(館學)의 통문을 위조하여 아들이 사는 황해도 연안부에 보내 그곳 유생들로 하여금 아들을 혜가출향하도록 유도한 사건이 인조 후반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

성윤, 「조선시대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학맥·학풍·향전·향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9(2006)에 상세하다.

42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27일(병술).

43 『계암일록』에 등장하는 이 두 사례에 대해서는 박현순(2008), 앞의 논문, 12-13쪽 참조. 참고로 박현순은 향소, 향약에서 주최한 사족들의 모임을 鄉會, 향교·서원의 경우 儒會로 구분하고, 혜가출향도 향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향별로, 유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유별로 나뉘었다.

황해도에서 관찰된 훼손출향의 관행인 셈이다.<sup>44</sup> 또한 현종 때 호남의 정개청(鄭介淸) 서원 훼손 시비와 관련하여 고두문(高斗文)이 훼손출향당한 일<sup>45</sup>,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경종 때 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충청도 보령 일향인들이 윤시택(尹時澤)이란 인물을 훼손출향하려고 논의한 사례<sup>46</sup> 등도 여타 지역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다음 기사는 인조 초에 사헌부에서 사족들의 훼손출향을 막기 위한 건의 사항을 담고 있는데, 당시 향촌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훼손출향 문제를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남의 풍속은 한 향리에 죄를 진 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집을 헐고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이 버릇은 조식(曹植)이 악을 너무 지나치게 미워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흘러 내려온 폐단이 이제 와서는 더욱 만연되어 다른 도까지도 잘못을 본뜨고 꺼리는 것이 없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전의 버릇을 이어가는 자는 무단(武斷)의 울로 다스리소서” 하니, 따랐다.<sup>47</sup>

위의 인용문에서 사헌부는 첫째, 마을민들이 집단으로 죄를 지은 자의 집을 헐고 마을에서 쫓아내는 훼손출향의 폐단이 남명 조식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주 음부옥 사건을 비롯한 선조대 훼손출향 사례가 경상우도 지역에서 북인계인 조식·정인홍의 문인들이 주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둘째, 당초 경상우도에서 시작된 이러한 행위가 다른 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44 『승정원일기』 85책, 인조 21년 8월 7일(무진).

45 『승정원일기』 179책, 현종 7년 9월 12일(기축).

46 『승정원일기』 551책, 경종 3년 2월 24일(갑술).

47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5월 3일(병진).

것 그대로인데, 사헌부의 우려처럼 경상우도에서 처음 시작된 휘가출향의 관행은 경상좌도를 거쳐 다른 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상의 진단을 바탕으로 사헌부에서는 셋째, 휘가출향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족들이 마음대로 휘가출향을 감행할 경우 무단율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한다. 수령을 배제하고 임의대로 추진하던 당시 사족들의 휘가출향은 관권을 부정, 내지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의 관주도 향촌통치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결국 사헌부의 요청에 따라 인조는 일체의 휘가출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단율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IV. 정부의 휘가출향 금지조치와 조선후기의 양상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조선 건국 직후 수령 주도 향촌통치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휘가출향 조치는 선조대 진주 지역을 필두로 하여 사족들에 의해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에 사족층이 향촌사회의 주도층으로 성장하면서 향리와 무단토호 등을 통제하고 사족 주도의 향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했던 향벌(鄉罰)로 변질된 것이다. 하지만 향풍 유지를 명분으로 한 향벌인 휘가출향이 다른 도에까지 확산되었고, 무엇보다도 향촌사회 주도 사족들이 향론을 거스르거나 자신들과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예컨대 바로 앞 장에서 제시한 사건들 외에도 효종 초 경상도 유생 유직(柳稷) 등이 영남남인의 입장에 서서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

는 상소를 올릴 때 이를 비판한 진사 신석형(申碩亨)을 출향시킨 사례<sup>48</sup>, 1666년(현종 7) 예송 논쟁과 관련하여 서인의 주장을 비판하는 영남 유생들의 복제(服制) 상소를 올릴 때 의성현에서 상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정거(停學)시키고 출향(黜鄉)한 행위<sup>49</sup>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 영남 남인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에 반하는 일부 유생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휘가출향 조치를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집권적 조선왕조에서 지방사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지역 사족층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은 자주 언급되는 사실이다. 수령이 백성들에 대한 교화(教化) 문제를 사족들에게 위임하여 향약의 기구가 자체 처벌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그런 사정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내 수령을 거치지 않고 사족들에 의해 과도한 자체 처벌이 행사될 경우 국왕의 대리자인 수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다. 특히 당사자를 고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무거운 벌인데다가 일부 지역에서 향전(鄕戰)의 형태로 확대되는 사족들 주도의 휘가출향은 쉽게 용납하기 곤란한 행위였다. 휘가출향이 수령권을 침해하는 사족들의 무단행위, 혹은 향전(鄕戰)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기에 이른 것은 이 때문이다.

휘가출향에 대한 정부의 금지 조치는 앞 장에서 제시했듯이 처음 1624년(인조 2)에 마련되었다. 이 인조 2년의 수교는 휘가출향이 여러 도로 파급되자 이를 금지시키고 여길 경우 무단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수교이다.<sup>50</sup> 이후 현종 7년에 다시 한번 휘가출향에 대한 금단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는

48 『浦渚集』 권6, 「卞柳機欺罔疏」: 『효종실록』 권4, 효종 1년 6월 29일(신해). 당시 신석정은 黜鄉 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축출되고(黜道), 항교에서 퇴출당하고 향안에서 이름이 삭제되는(黜校削籍) 처분을 당했다.

49 『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50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5월 3일(병진).

『수교집록』에 “훼가출향(毀家出鄉)은 인조조(仁祖朝)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일절 금단한다”는 내용으로 실렸고<sup>51</sup>, 영조대 『속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sup>52</sup> 한편, 정조 연간의 『대전통편』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훼가출향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집을 부순 경우의 처벌 형량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훼가출향(毀家出鄉)은 일절 금지한다. (增)민가를 부순 경우는 ‘고의로 자기 집을 불태운 자를 처벌하는 율문[故燒自己房屋律]’에 의거하여 처벌한다.<sup>53</sup>

위의 『대전통편』 규정은 훼가출향을 강행하기 위해 민가(民家)를 함부로 부순 경우 『대명률』의 ‘고소자기방옥율(故燒自己房屋律)’, 즉 고의로 자신의 집을 불태운 죄목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명률』에 그 형량이 장 100대이므로 훼가(毀家) 행위는 장형(杖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sup>54</sup> 이처럼 인조대에 최초의 수교가 마련된 이후 법전에서 줄곧 사족들의 훼가출향을 엄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역이나 패륜 행위자의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드는 행위, 즉 중국 『예기』에 나오며 조선 전기부터 시행했던 국가 형벌이 ‘파가저택(破家溼澤)’이라는 명칭으로 오히려 조선후기 법전에 공식화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51 『受敎輯錄』 권5, 刑典 「禁制」. “毀家出鄉 依仁祖朝受敎 一切禁斷(康熙 丙午(1666) 承傳)”

52 『續大典』 권5, 刑典 「禁制」. “毀家黜鄉者 一切禁斷”

53 『大典通編』 권5, 刑典 「禁制」. “毀家出鄉者 一切禁斷 (增)勒毀民家者 以故燒自己房屋律論”

54 자기 집을 고의로 불태운 경우 장 100대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명률』 刑律 雜犯 「故火故燒人房屋」조에 나온다. 참고로 불을 내어 화재가 다른 집이나 물건에 번진 경우 장100 도 3년, 방화 후 재물을 훔치거나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大明律直解』 권26, 刑律 雜犯 「故火故燒人房屋」. “凡放火 故燒自己房屋者 杖一百 若延燒官民房屋及積聚之物者 杖一百 徒三年 因而盜取財物者 斬 殺傷人者 以故殺傷論”).

흥미롭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15세기까지만 해도 파가저택, 휘가출향, 파가출향 등 용어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오면 법전에 금지시킨 사족들의 휘가출향과 달리 반역, 부친 살해와 같은 중대 강상죄인을 처형한 후 부가형으로서 그가 살던 집을 없애고 연못을 만들어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국가 조치는 ‘파가저택’이란 명칭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sup>55</sup>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부의 금지조치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휘가출향 행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조선시대 향중 공론을 배경으로 재지 유력자들이 행사하던 자체 처벌의 관행과 전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이나 동리(洞里) 조직에서 향풍 진작을 명분으로 평, 천민을 대상으로 한 향벌의 행사 모습은 조선후기의 기록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두 사례는 영조대의 두 지역 사례인데 향촌사회 휘가출향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모두 지방관이 감영에 올린 사건 보고서를 담은 보첩(報牒) 기록인데, 내용이 다소 번잡하지만 다른 기록에 비해 지역 사정과 휘가출향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먼저 『상산록(尙山錄)』에 등장하는 손악지(孫惡只) 사건과 관련한 옥안(獄案)을 통해 1745년(영조 21) 경상도 상주 지역의 상황을 보자.<sup>56</sup> 해당 기록은

55 15세기까지 ‘휘가출향’과 혼용해서 사용되던 ‘파가저택’은 16세기 이후 완전히 분리되는데, 특히 조선후기에는 휘가출향과 달리 강상죄인과 반역죄인에 대한 국가 조치로서의 파가저택이 공식화되었다. 조선왕조에서 파가저택 관련 법규, 용어의 분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는 작업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로 파가저택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속대전』 규정 참조. 『續大典』 권5, 刑典 推斷. “綱常罪人(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 結案正法後 妻子女爲奴 破家瀕澤 降其邑號 罷其守令(從時居邑 ○縣令以上 降縣監 縣監勿革 而序諸縣之末 限十年復舊 ○反逆緣坐 自有本律 破家以下用此律) 結案後徑斃者 一體論.”

56 이하의 내용은 『尙山錄』, 「孫惡只獄案」(『한국지방사자료총서: 보첩편3』(여강출판사, 1987), 289-356쪽)에 의거하였다.

상주 청남면 덕산에 거주하는 양녀(良女) 손악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시아버지에게 당한 피해 상황을 시아버지가 거주하는 동오리 동중(洞中)에 투서하면서 알려진 사건과 그 처리과정을 담고 있다.

손악지의 아버지는 손순문(孫順文)이며, 손악지의 시아버지는 기병 김태회(金太回)이다. 손순문의 주장은 손악지가 시아버지 김태회에 의해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했고, 이를 거부하자 억울하게 소박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태회는 손순문의 주장에 대항하여 며느리 손악지가 가난하고 병든 남편과 시댁에 불만을 품고 다른 곳에 시집가기 위해서 자신을 강간죄로 무고했다는 항변이다. 주목할 것은 손순문이 동중(洞中)에 투서(投書)하면서 언급한 진술이다. 그는 김태회가 백주대낮에 며느리인 자신의 딸 손악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며느리를 소박했는데도 이런 자를 왜 ‘훼가출동(毀家出洞)’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였다.<sup>57</sup> 당시 이 지역에서 음행(淫行) 등 고을의 풍기를 해친 자에 대해 동회의 결의로 훼가출동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손악지 옥안에는 이 지역 동회(洞會)의 기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급이 나온다. 즉 당초 손순문이 투서한 이후 동중 소임(所任)이 통문(通文)을 돌려 일동 상하민 100여명이 모여서 투서한 손순문과 그의 딸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기록은 비록 실제 훼가출향을 집행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 지역 동회에서 상하민이 논의하여 고을의 풍속을 해친 사건을 논의하고 심한 경우 피벌자를 훼가출향하는 일이 당시에 결코 낮은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위의 상주 사례보다 10년 전인 1735년(영조 11) 남원현감이 관찰

---

57 원문에는 “日前順文 投書於矣洞中曰 金太回 癸亥十月日 欲劫奸子婦於白晝 以其不從 故疎而出之 矣女衣服五六件 奪而不給 如此之人 何不毀家出洞云云是乎等以 自洞中招致順文 問其曲折……”라고 되어 있다(위의 책(1987), 290쪽).

사에게 올린 사건 보고서에 나오는 훼가출향의 사례이다.<sup>58</sup> 이 보고서에는 남원현 토곡방에 거주하는 과부 청송심씨가 그녀의 비부(婢夫) 서두선(徐斗善)이란 자로부터 능욕을 당한 사건 내용이 실려 있다. 토곡방 풍헌(風憲)의 문장(文狀)에 따르면 과부 심씨가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습게 안 그녀의 비부 서두선이 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심씨가 그 죄악을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한글 단자를 올렸다. 그런데 현감 조사 결과 서두선은 이미 그 전에 흥덕(興德) 땅에서 양반을 능욕한 죄로 훼가출향[毀家見出]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sup>59</sup> 비부 서두선의 신분과 그가 양반을 능욕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본 기록을 통해 당시 흥덕 지역에서의 하민(下民)에 대한 훼가출향 집행 사례를 포착할 수 있다.

이상 두 사례는 상주와 흥덕 지역사회의 상황과 훼가출향의 주도 세력을 알 수 없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전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풍기 단속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 관행적으로 훼가출향이 행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치이긴 하지만 향촌사회 사족들의 고을의 교화와 향풍 진작의 명분을 정부로서도 완전히 부정하기는 곤란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사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향권을 점차 잃어가고 향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해 향벌의 시행은 쉽지 않았다. 또 법전에 명문화하여 금지한 이상 사족들의 훼가출향은 언제든지 향전으로 지목되

58 『南原縣牒報移文成冊』(二), 「乙卯十月日 報巡營」(『한국지방사자료총서: 보첩편2』(여강출판사, 1987), 250-254쪽 참조).

59 원문에는 “今因風憲之聲罪論罪 既已捉囚 (….) 又以爲斗善 曾在興德地 以凌辱兩班 毀家見出 以盜賊被囚於順天鎮營 亂杖受刑……”라고 되어 있다(위의 책(1987), 252쪽).

거나 혹은 관권을 무시한 토호배들의 무단 행위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대의 일이고 전후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19세기 말 수원군의 심진사(沈進士)가 유사민(劉士敏)이란 자의 집을 부수고 마을에서 쫓아낼 때 농민 공화서(孔化西)란 인물이 종범(從犯)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공화서를 ‘훼가출향(毀家出鄉)’의 죄목으로 태형 90에 처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sup>60</sup> 이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훼가출향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향촌 사족들의 이러한 조치는 언제든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군현, 혹은 촌락 단위에서 행해졌던 이른바 훼가출향의 사례와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고대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훼가출향은 고려시대에 시행했던 기록이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당초 국가에서 시행하는 형벌이자 집을 헐어 가족 모두 거주권을

60 『光武元年十二月日 京畿裁判所刑名簿』(규장각 소장, 奎 21162) 참조. 형명부는 범죄 종류와 형률, 선고 일자 등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어 농민 孔化西가 연루된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선고가 내려진 일자가 1897년 12월 15일이며, 『대명률』의 制書有違條와 共犯罪分首從條에 의거하여 笞90에 처해진 孔化西가 사면을 받아 석방된 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한편, 훼가출향 금지에도 불구하고 훼가출향의 필요성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1899년(광무 3) 충남 서산군에서 발생한 과부 자살사건이다(『忠清南道 瑞山郡 銅岩面 夫丹里 致死女人 柳氏 獄事文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21648). 해당 사건에서 서산군 동안면 거주 양반 任忠鎬는 이웃의 과부 柳氏가 간통을 했다고 의심하여 동리에 通文을 돌려 그녀를 ‘毀家出送’하여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향촌사회 지배 세력으로 사족들이 성장하면서 시기에 따라, 시행 주체에 따라 훼손출향의 성격에 차이가 존재했다.

본고는 향촌사회 형벌권, 자체 처벌권을 통해 수령과 향촌사족의 향촌지배의 점점, 지역공동체의 관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선시대 훼손출향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와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본문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초기의 상황이다. 세종대의 부민고소금지법에서 도형·유배형과 함께 훼손출향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출향’이란 단어로 법제화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건국 이후 군현의 토착 세력인 토호, 부민층을 견제하고 관주도 향촌통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훼손출향 조치가 국가 형벌의 성격을 지녔다. 여기서 훼손출향은 대개 파가저택출향(破家涖宅黜鄉), 즉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든 후 해당자를 고을에서 축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까지만 해도 훼손출향, 파가저택 등이 서로 넘나드는 용어로 함께 쓰였다.

다음으로 16세기 향촌자치 질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훼손출향은 사족들이 향풍 유지를 명목으로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향벌로 변질되었다. 특히 선조대 북인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상우도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훼손출향은 공론을 빌미로 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향중 세력간의 다툼으로 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족들의 훼손출향 금지 조치가 입법화된 이후인 조선후기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는 사족들의 훼손출향은 금지되고 대략 16세기경부터 시행되던 역모죄인과 패륜범에 대한 파가저택만이 공식적인 국가 형벌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시행되던 관습을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훼손출향이 여전히 지역에 따라 관행적으

로 행해지기도 했다. 물론 언제든지 관권에 대항하는 무단 행위로 지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벌의 행사에는 제약이 불가피했다.

다소 성급하지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향촌 사회질서 속에서 사족의 강한 자체 처벌권, 재판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향촌지배세력으로 성장한 사족들이 16, 17세기 향안을 매개로 하여 향권을 행사하고, 향약과 동계를 시행하면서 향벌을 행사하는 모습을 사족 주도 향촌지배체제, 사족지배체제라 불러왔다. 하지만 본고에서 검토한 휘가출향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족들의 자치권이 가장 컸다고 여겨지던 조선중기에도 관권을 초월하여 사족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은 물론이고 사족들의 형벌권 행사는 언제든지 관권에 의해 제약될 수 있었다.<sup>61</sup> 요컨대 수령으로 대표되는 관권이 조선시대 내내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에서 자주 이야기되던 사족 주도 향촌운영이라는 것도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왕조 지방통치의 틀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집필과정에서 느낀 본고의 한계를 짚어보고 싶다. 사실 사족자치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되므로 휘가출향만을 가지고 자치권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휘가출향이 조선후기까지 지속된 것에 대한 해석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사족만이

---

61 최근 김성우는 사족의 세력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17세기 경상도 지역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족들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사족들의 권한은 공권력에 비추어 그 한계가 명확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官尊民卑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성우, 「국가와 지역 사족의 대립과 갈등: 17세기 경상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33(2017)). 비록 관존민비라는 용어로 단순화된 느낌이 있지만 지방사회의 모습을 통해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특징을 해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아니라 지역공동체, 동리 조직의 관습과 규범 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高麗史』, 『禮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經國大典』, 『受教輯錄』, 『續大典』, 『大典通編』, 『唐律疏議』, 『大明律直解』.  
『栗谷全書』, 『白沙先生別集』, 『寒岡先生別集』, 『竹軒集』, 『浦渚集』.  
『孤臺日錄』, 『商山錄』, 『南原縣牒報移文成冊』.  
『光武元年十二月日 京畿裁判所刑名簿』.

### 2. 단행본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7.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寺田浩明, 『中國法制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8.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刑法』. 東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59.

### 3. 논문

- 김무진, 「조선후기 성주 향촌사회 재지사족층의 동향」. 『한국사연구』 105, 1999, 79-113쪽.  
김성우, 「국가와 지역사족의 대립과 갈등: 17세기 경상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33, 2017, 109-150쪽.  
김성운, 「조선후기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학맥·학풍·향전·향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9, 2006, 143-205쪽.  
박현순, 「조선후기 鄕鄕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 105, 2004, 1-31쪽.  
\_\_\_\_\_, 「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儒罰」. 『한국문화』 42, 2008, 3-35쪽.  
백승아, 「15·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한국사론』 61, 서울대학교사학과, 2015, 121-177쪽.  
이태진, 「사림과의 留鄕所 복립운동: 조선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 34·35, 1972·1973, 5-34쪽·5-33쪽.

정만조, 「선조초 진주 淫婦獄과 그 파문」. 『한국학논총』 22, 1999, 69-94쪽.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 17-68쪽.

奥村郁三, 「中國における官僚制と自治の接點: 裁判權を中心として」. 『法制史研究』  
19, 1969, 25-50쪽.

## 국문초록

훼가출향(毀家黜鄉)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당사자를 고을에서 축출하는 처벌을 말한다. 중국 고대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훼가출향은 고려시대에 시행했던 기록이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국가 형벌이자 집을 헐어 가족 모두 거주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본고는 향촌사회 형벌권의 행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령과 향촌사족의 향촌지배의 접점, 그리고 관치(官治)와 자치(自治)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훼가출향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건국 이후 관주도 향촌통체책의 일환이었던 세종대의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에서는 도형(徒刑)·유형(流刑)과 함께 훼가출향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출향(黜鄉)’이란 단어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16세기 사족층이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고 향촌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훼가출향은 사족들이 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향풍 유지를 명목으로 행사하는 자체 향벌(鄉罰)로 변질되었다. 셋째, 조선후기에는 사족들의 훼가출향은 금지되고 대략 16세기경부터 시행되던 역모죄인과 패륜범에 대한 파가저택(破家滯澤)만이 공식적인 국가 형벌로 자리잡게 된다.

이상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왕조에서 사족 주도 향촌운영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사족의 자치권은 한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0. 9. 14.

심사일 2020. 10. 29.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훼가출향(毀家黜鄉), 파가저택(破家滯澤),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향벌(鄉罰), 향약(鄉約), 향론(鄉論), 향전(鄉戰)

## Abstracts

### Incidents of “Dismantling Households and Expelling them from Hometowns(‘Hwega Chul’hyang, 毀家黜鄉)” in the Joseon Period, and the Local Communities of Joseon

Sim, Jae-woo

‘Hwega Chulhyang, 毀家黜鄉’ refers to a punishment which “tore down the offender’s house and expelled the offender (and its family) from the town.” This punishment was for people who violated the community’s code and culture so much and was therefore deemed unfit to be allowed to live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community, and it was also a punishment that required a consensus within the community. Punishment of this kind seems to have originated in ancient China, and there is a record of it being implemented in the Goryeo period as well. It was not only a State punishment but also a guilt-by-association penalty, as the residential privileges of not only the offender but also the offender’s entire family was revoked.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is very punishment observed by the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determine how local prefects and Sajok figures cooperated in regional governance. Punishment of this kind is what may shed some light on how ‘rule by the authorities’ coexisted with local communities’ autonomous control of their own society, and here it is examined over three different periods: the early, middle and final stag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First, in the early days of the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wanted to control local communities. The ‘Bumin Goso Geumjibeob(部民告訴禁止法)’ of King Sejong’s era was a ban on local residents filing lawsuits against each other, and alongside punishments such as Flogging(Do’hyeong, 徒刑) and Exile (Yu’hyeong, 流刑), the above-mentioned ‘house tearing as well as expulsion from the town’ was also included as a punishment applicable by this law. In Gyeongguk Daejeon it was also legalized under the term ‘Expulsion (Chul’hyang, 黜鄉).’

Secondly, in the 16th century the Sajok figures rose as the governing force of local societies, and in the process the punishment described above became a punishment that was executed by the Sajok community in a rather autonomous

fashion("Hyangbeol, 鄉罰"), as they were trying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authorities.

Thirdly, in later periods, expelling Sajok figures from their hometowns was banned, and as an official procedure only the 'Traacherous offenders' and 'Depraved offenders' were subjected to the punishment of "destroying the residence and turning them into puddles('Paga Jeotaek, 破家滯澤)," a punishment that had taken shape around the 16th century.

As we can see, local governance by the Hyangjok figures featured different stages in different times, and even though the Sajok community was able to retain some level of autonomy, there were limitations as Joseon was a dynasty governed by a central authority.